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31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허 영·박지원·서영교

박상혁 • 권칠승 • 박성준

임호선 · 소병훈 · 한정애

안도걸 • 이연희 • 홍기원

김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수자원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일부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더라도 생활·공업용수 등 물 공급의 편익이 발생함. 그 반면에 수자원시설을 보유하는 지자체의 경우 수원보호를 위한 수자원시설 주변 개발·행위제한, 지방하천·소하천 관리비용 부담 등지역주민의 생활과 재정에 상당한 피해를 동반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각 시·도지사가 관할 유역의 댐·수도·하

천·지하수 등 수자원과 수자원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 유역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자원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게 그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 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2·제31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 다.

제4장의2(제31조의2 및 제3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취수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31조의2(취수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유역 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자원의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 대하여 그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취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자(공급받는 자가 수도사업자인 경 우는 제외한다)
 -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 3.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수(流水)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 4.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수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 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취수부담금을 제31조의3에 따른 유역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취수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 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취수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제31조의3(유역관리기금의 설치 등) ① 유역 관계 시·도지사는 원활한 유역 물관리를 위하여 각 시·도별로 유역관리기금을 설치한다.
 - ② 유역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취수부담금 및 가산금
-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용료·점용료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가. 「하천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 나.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등
 -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유역관리기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 5. 유역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유역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한다.
- 1. 유역별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
- 2. 수자원의 개발 · 보전과 공급 · 이용 · 배분
- 3.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
- 4. 수자원시설의 설치 관리
-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유역 물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④ 환경부장관은 유역 물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유역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 1.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워 지사"라 한다)----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의2 취수부담금의 부과ㆍ징 수 등 <신 설> 제31조의2(취수부담금의 부과・ 징수) ① 시·도지사는 유역 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 자원의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 대하 여 그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

- (이하 "취수부담금"이라 한다)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 른 상수원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 급받는 자(공급받는 자가 수 도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u>자</u>
- 3.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 항에 따라 유수(流水)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
- 4.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

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수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 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취수부담금을 제31조의 3에 따른 유역관리기금에 납부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취수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 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 수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취수부담금이 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 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의3(유역관리기금의 설치 등) ① 유역 관계 시·도지사 는 원활한 유역 물관리를 위하 여 각 시·도별로 유역관리기 금을 설치한다.

<신 설>

- ② 유역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취수부담금 및 가산금
-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용 료・점용료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가. 「하천법」 제50조제7항 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 <u>내. 「소하천정비법」 제22조</u> <u>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u> 료등
 -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료·사용료
-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출연(出捐)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유역관리기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 5. 유역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유역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

- 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유역별 물환경 보전 및 관 리, 복원
- 2. 수자원의 개발·보전과 공급·이용·배분
- 3.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 방
- 4. 수자원시설의 설치·관리
-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유역 물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① 환경부장관은 유역 물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유역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